

# ○ 勤勞者의 勞動3權

## - 現行

31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·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. 다만,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.

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·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.

③國家·地方自治團體·國公營企業體·防衛産業體·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- 改正案

32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·團體交涉權을 가진다. 다만,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.

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·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.

③法律이 定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- 民主案

32條 모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改善과 經濟的, 社會地位向上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,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지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.

一 非完全集之

i) 團體行憲法之行使에 대한 限制  
條件條項 (第 31 ① 條)

ii) 公務員의 勞動條件에 대한 제한  
條件 (第 31 ②)

iii) 公務員等에 대한 團體行憲法  
制限條項 (第 31 ③)을 모두 삭제  
하오함

i)  
一 團體行憲法은 그 行使가 지나칠 경우  
2條의 存否와 2條의 存否의 存否에 대해  
2條에 制限한 可能性이 있음에  
그 存否상 2條에 대해 2條의 存否가 있음  
은 2條의 存否가 있음.

- 자(2)의 2개부분 合法別은 제한은  
없다

- 따라서 개별규정이 있을 때 의한  
차이에 따라 限制 存在

- 規定條項의 一般條件條項으로서  
하라는 規定인 듯하나 일반적으로  
정부를 管理하기 爲한 民衆의 利益에서  
는 制限이 存在한다

ii)

- 公務員의 職務 3개 制限은 이론상으  
로 可能하다. 總論적으로 規定  
(예. 懲戒, 停職, 免職 등)

- 12條의 規定으로서의 公務員의 職務

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있음을 감안. 헌법에  
제외된 사람이 바깥사람.

- 헌법기관 중의 공무원에 대한 조항  
이 헌법을 헌재로 인정되고 있다.  
그 범위 내 인정이 현실적으로  
이러므로 타당.

iii)

- 특정 신분 등 특수의 직업  
분야에 대해서는 양복 재치 등의 안전  
유지도 고려. 제헌이 불가피함.